

01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법 제52조제1항)

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

도로교통법 상 교육시설

2020.11.27 시행예정

기존

추가

| | | |
|------|------------|------------|
| 유치원 | 유아교육진흥원 | 대안학교 |
| 초등학교 | 외국인학교 | 교습소 |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 어린이집 | 장애인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
| 학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평생학습관 |
|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2020.11.20 시행예정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

| | | | |
|----------|-------|--------|------------|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 | 스키 | 자동차경주장업 |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 | 조정 | 카누 |
| | 승마 |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
|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체육도장 |
| | 별매장 | 야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7종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추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에 추가(축구클럽 등)

어린이(13세미만)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 시 포함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신고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체육교습업은 1년간 유예)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 (법 제52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조·장치

| | | | |
|--------|---------------|---------|--------|
| 좌석부착장치 | 황색도색 | 어린이보호표지 | 정지표시장치 |
| 좌석규격 | 접이식좌석 | 좌석안전띠 | 보조발판 |
| 표시등 | 광각실외후사경 | 후방카메라 | 후방경고음 |
| 하차확인장치 |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 | | |

어린이보호표지

▶ 통학버스 앞면 우측상단, 뒷면 좌우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곳

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소유관계

- ▶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법 제53조제3항)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 동승보호자는 승·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의 경우

-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부과
- ▶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구류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함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제53조제5)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함)

신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법 제53조제6항)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보호자 동승표지)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02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신설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법 제53조5)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

- 새롭게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유예하면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한시적 규정 (2022년 11월 26일까지 적용)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부과

강화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법 제53조제4항, 5항)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의무 및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작동 의무

하차 확인 의무 위반시 각 조항별

-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부과
- ▶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부과

03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신설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 제53조3)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이수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함

04 | 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법 제53조제7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설 인·허가권자 예) 학원→교육감, 체육시설→지자체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신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법 제53조의4)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2020.11.27 시행예정

01 통학버스 운전자

▶ 미신고 운행 (제52조제1항)
 ▶ **신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제52조제3항)
 *①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②어린이보호표지 ③보험 ④소유관계
 과태료 30만원

▶ **강화**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제3항)
 ▶ **신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제53조제6항)
 30만원이하 벌금, 구류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02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제1항)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제2항)
 ▶ **신설**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강화**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제53조제4항) 30만원이하 벌금, 구류
 ▶ **강화**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제53조제5항) 벌점 30점

▶ 어린이 안전띠 착용(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03 일반 운전자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제1항))
 ▶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의 반대방향 진행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제2항)
 ▶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제51조제3항)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위반(제52조제4항) 범칙금 3만원

04 안전교육

▶ 운전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신설**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교육감·지자체장)



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